

비영리 사단법인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변조하거나 생활법령정보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법인이란 사람이 아니면서 부동산거래 등과 같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사람들이 모인 단체 또는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말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에 대한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에서는 법인의 개념, 사단법인의 설립절차, 사단법인의 설립등기, 사단법인의 기관, 사단법인의 재산운영, 사단법인 지원,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1
1. 법인 개관	5
1.1. 법인의 개념	5
1.1.1. 법인이란	5
1.2. 법인의 종류	6
1.2.1.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6
1.2.2.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7
1.3. 유사단체	9
1.3.1. 유사단체	9
1.4. 사단법인의 설립절차	10
1.4.1.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절차 개요	10
2.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13
2.1. 설립준비	13
2.1.1. 설립준비	13
2.2. 설립허가 신청	15
2.2.1. 주무관청의 확인	15
2.2.2. 설립허가 신청	20
2.3. 설립등기	22
2.3.1. 설립등기 및 설립신고 등	22
3. 비영리사단법인의 능력	27
3.1. 사단법인의 능력	27
3.1.1. 권리능력	27
3.1.2. 행위능력	28
4. 비영리사단법인의 기관	30
4.1. 사단법인의 기관	30
4.1.1. 임원선임	30
4.1.2. 이사	32
4.1.3. 감사	35
4.1.4. 사원총회	35
5. 비영리사단법인의 운영	37
5.1. 등기 및 정관변경	37
5.1.1. 등기	37
5.1.2. 정관의 변경	38
5.2. 주소 및 분사무소	39
5.2.1. 주소	40
5.2.2. 주소의 변경	40
5.2.3. 분사무소 설치, 이전 및 폐지	42
5.3. 사업운영	44
5.3.1. 목적사업	44
5.3.2. 수익사업	44
5.4. 재산운영	46
5.4.1. 재산구분 및 처분 등	46
5.5. 업무보고 등	46
5.5.1. 주무관청에 업무보고 등	46
5.6. 지원	47
5.6.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47

6. 비영리사단법인의 소멸	50
6.1. 해산	50
6.1.1. 해산사유	50
6.1.2. 해산허가	51
6.2. 청산	52
6.2.1. 법인의 청산	52
6.2.2. 청산법인의 기관 및 직무	53

1. 법인 개관

1.1. 법인의 개념

1.1.1. 법인이란

법인의 의의

법인이란 ?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에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것, 즉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은 권리능력을 인정받아 그 구성원이나 관리자와는 별도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종류

법인의 종류

법인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공법인과 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법인과 사법인

법인에는 그 설립이나 관리에 국가의 공권력이 관여하는 공법인과 그 밖의 법인인 사법인이 있습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과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법인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인 사단법인과,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이루어진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이 사이트의 [<법인의 종류-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이 사이트의 [<법인의 종류-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사단체

유사단체의 종류

비영리법인의 유사단체로 법인 아닌 사단·재단과 조합 등이 있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은 단체의 행동이 그 기관에 의해 행해지고 법률효과도 단체 자체에 귀속하는 등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만 법인으로서는 인정되지 않는 단체를 말합니다.

"법인 아닌 재단"은 비영리 목적을 위해 출연되고 일정 관리조직을 갖추고 정해진 목적 범위에서만 행동을 할 수 있는 등 재단법인의 실체가 되는 재단으로서의 실질은 있으나,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재단을 말합니다.

"조합"은 단체로서의 단일성보다는 구성원의 개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단체로서 단체의 행동도 그 구성원 전원 또는 전원으로부터 대리권이 주어진 자에 의해 행해지고, 그 법률효과도 단체 자체가 아닌 구성원 모두에게 귀속하는 등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단체를 말합니다.

※ 유사단체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이 사이트의 <[법인 개관-유사단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법인의 종류

1.2.1.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영리법인의 의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영리법인"이라 합니다.

※ "영리 목적"이란 법인이 영리적인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인 사원(社員)의 이익을 도모하고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법인이 공익적 사업을 하여도 그 사업에 따른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함으로써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 법인은 영리법인입니다.

※ "사원(社員)"이란 사단법인의 구성원으로 주식회사의 주주를 말하며, 단순히 직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리법인의 종류

가장 전형적인 영리법인으로 「상법」의 적용을 받는 각종 '회사'를 들 수 있습니다.

"사원이 없는 재단법인"은 이익을 분배할 수 없기 때문에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재단법인에서 일하는 사람은 재단법인의 직원일 뿐 법인의 구성원으로서의 사원은 아닙니다.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의 의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고 합니다(「민법」 제32조 참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

비영리법인의 종류

「민법」에 의해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 밖에 「민법」 외에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으로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의료법인(「의료법」),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등이 있습니다.

1.2.2.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사단법인

의의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

특징

사단법인은 '사람'이라는 구성원이 필수요소이고 사단법인의 의사는 사원총회를 통해 형성됩니다.

사단법인은 임의해산이 가능하고, 그 설립목적이 영리를 추구하든 비영리를 추구하든 설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조 및 제39조).

재단법인

의의

"재단법인"이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을 말합니다.

특징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이 필수요소이고, 재단법인의 의사는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재단법인은 임의해산을 할 수 없고, 그 설립목적이 비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구분

설립행위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법인의 근본규칙을 정한 후 이를 정관에 기재하고, 주무관청의 허가 및 법인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 제32조, 제33조 및 제40조 참조).

※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이 주무관청이 됩니다. 만약, 법인의 목적이 두 개 이상의 행정관청의 관할 사항인 때에는 그 행정관청들은 모두 주무관청이 되며, 그 중 어느 하나의 행정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법인은 설립되지 않습니다(예시: 학술과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주무관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이 사이트의 <[설립허가 신청-주무관청의 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목적 및 조직을 가진 재단법인을 설립한다는 의사와 일정한 재산을 출연(出捐)한다는 의사를 정관에 기재하고, 주무관청의 허가 및 법인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 제32조, 제33조 및 제43조).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생전처분 또는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재단법인은 사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민법」 제47조).

정관변경

사단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원총회의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42조).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에서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관변경의 정수에 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민법」 제42조제1항).

재단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그 변경방법이 정해져 있어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45조제1항·제3항 및 제42조제2항).

다만,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정관에 그 변경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도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같이 재단법인의 본질에 영향이 적은 것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5조제2항).

법인의 기관

법인이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에 따라 활동을 하고 법인 내부의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이 필요한데, 이 조직을 이루는 것이 법인의 기관입니다.

사단법인은 사원구성이 필수요소이며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사회적 활동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재단법인은 사원을 구성할 필요가 없어 사원총회라는 의사결정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단법인의 의사결정은 재단법인을 설립한 설립자가 설립행위로 정한 정관에 따라 재단법인의 사회적 활동이 결정됩니다.

법인의 해산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로 사단법인을 해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7조제2항).

또한, 사단법인의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그 밖의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됩니다(「민법」 제77조제1항).

재단법인은 임의로 해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단법인의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그 밖의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됩니다(「민법」 제77조제1항).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구분 개요>

구분	사단법인	재단법인
법인의 구성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을 구성요소로 하는 단체	일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출연'을 구성요소로 하는 단체
법인의 형태	영리 형태 및 비영리 형태 가능	비영리 형태만 가능
설립 행위	2명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정관 변경	사원총회의 결의 + 주무관청의 허가	정관에 정관변경방법 기재 + 주무관청의 허가
법인의 기관	사원총회 및 이사	이사
법인의 해산	임의해산 가능	임의해산 불가

1.3. 유사단체

1.3.1. 유사단체

법인 아닌 사단·재단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의 개념

"법인 아닌 사단"이란 사단법인의 실체가 되는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나, 법인으로 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의 특징

법인 아닌 사단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거나 행정관청의 감독 및 그 밖의 규제를 받기 원하지 않아 처음부터 법인으로 설립하지 않았거나, 법인이 설립 도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도 사단으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사단법인의 정관과 유사한 규칙을 마련하여 대표의 방법·총회의 운영·재산 관리 등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의 행위능력·대표기관의 권한과 그 대표의 형식·대표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단의 배상책임 등에 대해서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법인 아닌 사단"에는 종중, 교회, 아파트임주자대표회의([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아파트부녀회([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52723 판결](#)) 등이 있습니다.

법인 아닌 재단

법인 아닌 재단의 개념

"법인 아닌 재단"이란 재단법인의 실체가 되는 재단으로서의 실질은 가지고 있으나 법인으로 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법인 아닌 재단의 특징

법인 아닌 재단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거나 행정관청의 감독 및 그 밖의 규제를 받기 원하지 않아 처음부터 법인으로 설립하지 않았거나, 법인이 설립 도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 아닌 재단의 사회적 활동에 따른 법률관계 등은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 권리능력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 "법인 아닌 재단"에는 자선기금 및 장학재단 등이 있습니다.

조합

조합의 개념

"조합"이란 단체로서의 단일성보다 구성원의 개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단체로서, 단체의 행동은 구성원 전원 또는 전원으로부터 대리권이 주어진 자에 의해 행해지고 그 법률효과도 단체가 아닌 구성원 모두에게 귀속하는 등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단체를 말합니다.

조합의 특징

「민법」은 이러한 조합을 법인으로 하지 않고 구성원 사이의 계약관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민법」 제 703조, 제 704조 및 제 706조).

조합은 2명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 703조 및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5140 판결](#)).

조합은 공동사업을 경영해야 하며, 그 사업이 영리적이든 비영리적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조합의 사회적 활동은 전체 조합원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 조합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입법정책상의 문제로 실체에 있어 조합이면서도 법인격이 주어지는 것(예, 「상법」상 합명회사)도 있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 '조합'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것 중 모두 그 실체가 조합인 것은 아니며, 그 중에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것(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도 있습니다.

1.4. 사단법인의 설립절차

1.4.1.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절차 개요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 단계별 설명

제1단계 : 설립준비

찾기 쉬운 생활법령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법인의 명칭 및 목적을 정한 후,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제2단계 : 사단법인 설립허가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주무관청)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학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자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 됩니다.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무관청을 확인한 후 해당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이때 각 주무관청이 정한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

주무관청은 설립허가신청이 적절하면 설립허가 처분을, 설립허가신청이 부적절하면 설립불허가 처분을 그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제3단계 : 사단법인 설립등기

설립허가 받은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 제33조).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절차 개요

사단법인 단계별 설립절차 개요

사단법인 설립	내용
사단법인 설립준비	① 사단법인 목적 및 명칭 정하기
	② 정관작성
	③ 창립총회 개최
사단법인 설립허가	④ 설립대상 사단법인의 주무관청 확인
	⑤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
	⑥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사단법인 설립등기	⑦ 관할법원 (등기소) 에 설립등기

2.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2.1. 설립준비

2.1.1. 설립준비

법인의 목적

설립할 법인의 목적 정하기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합니다(「민법」 제32조).

※ "영리 아닌 사업"이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설립자의 구성

설립발기인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2인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합니다.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설립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해 그 정관에 기명날인하고 법인의 구성원을 확정하는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목적이 동일한 사람들을 모집해야 합니다.

법인의 명칭

설립할 법인의 명칭 정하기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목적에 정한 후에는 설립할 법인의 명칭을 정해야 합니다.

법인의 명칭은 사업목적에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정해야 하고, 설립할 법인의 명칭이 기존의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 기존에 설립된 법인의 명칭과의 동일여부는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열람·발급-법인열람·발급-등기상호검색>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관의 작성

정관의 개념

"정관"이란, 비영리사단법인의 구성·운영 등의 사항을 정한 근본규칙으로 서면에 기재되고, 설립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을 말합니다.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법인을 구성·운영해야 하며,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에 정관을

찾기 쉬운 생활법령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관 기재 사항

비영리사단법인의 정관은 아래의 사항들 모두를 기재해야 하고, 아래의 사항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40조).

- ① 목적: 법인의 사업목적을 기재합니다.
- ② 명칭: 법인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③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사무소가 두개 이상인 때에는 모두 기재하고 주된 사무소를 정해야 합니다.
- ④ 자산에 관한 규정: 자산의 종류·구성·관리·운용방법·회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의 방법을 정하여 기재하되,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는 선임방법을 정하거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이사에 임면할 것을 기재하여도 상관없습니다.
- ⑥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사원의 입사·퇴사 및 제명 등에 관한 것을 기재합니다.
- ⑦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법인의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기재합니다.

※ 위의 사항 이외의 사항도 정관에 기재할 수 있으며, 정관에 기재된 사항들은 모두 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에 해당됩니다.

정관의 확정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자들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을 한 뒤에 창립총회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면 작성된 정관은 확정됩니다.

기관구성

기관의 종류

법인이 거래 등의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활동을 대신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로 구성되는 기관이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내부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며, 외부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법인의 기관'이라 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기관으로 반드시 '이사'를 두고 '사원총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다만, '감사'는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정관에 따라 사원총회를 구성·운영하고, 이사의 선임방법 및 감사를 두는 경우 감사의 선임방법은 정관에 따르며, 최초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은 창립총회에서 확정됩니다.

창립총회

개념

"창립총회"란, 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단체를 구성하는 일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고, 임원 선임, 정관의 채택 등과 같은 의사결정을 위한 모임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설립자가 작성한 정관의 확정 및 정관규정에 따른 임원 선임 등을 창립총회에서 결정하며, 단체구성원인 사원이 발기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발기인총회가 창립총회로 됩니다.

2.2. 설립허가 신청

2.2.1. 주무관청의 확인

설립허가 관련 법령의 확인

설립허가 규정 법령의 확인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조).

사업의 목적이 「민법」 제32조 본문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한 후,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설립허가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해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자선에 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을 확인합니다.

관할 주무관청의 확인

주무관청 확인 및 설립허가 신청서 제출

설립준비를 마친 후 설립하려는 사단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무관청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조직법」과 각 부·처·청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등을 살펴 업무소관을 검토한 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을 검토하여 그 업무의 위임여부를 따져 주무관청을 확인합니다. 다만,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둘 이상인 때에는 두 곳 모두 주무관청이 됩니다.

권한의 위임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허가 및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등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이 위임될 수 있습니다.

소관	위임규정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함)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을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9조의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 이하의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함)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을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의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8조제6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함)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제1항제15호).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우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및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은 제외함)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및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제2항제2호).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함)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을 해당 비영리법인의 소재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제3항). ① 국립과천과학관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강원특별자치도인 비영리법인 ② 국립중앙과학관장: 소재지가 위 ① 외의 지역인 비영리법인
교육부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함)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
외교부	외교부장관은 외교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함)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을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에게 각각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함)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을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

소방청	소방청장은 소방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함)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을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9조제4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을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에게 각각 위임합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체육, 미디어 또는 종교 분야가 아닌 법인으로서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관청이 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함)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을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1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함)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을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7호).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함)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을 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 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자치시농업기술센터소장, 통합특별시농업기술원장, 도 농업기술원장 및 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에게 각각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3조제2항).
산림청	산림청장은 산림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함)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의 권한을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제외함)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을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5조제1항제2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을 4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제3항제4호). 1. 장사시설 설치 또는 한센인 정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2. 위 1. 외의 법인 중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법인(다만,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은 제외함)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을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합니다. 다만, 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 이하의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의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제2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은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고용노동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3개 이하의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함)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각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9조제2항). 1. 법인의 활동범위가 1개의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9조제2항제1호). 2. 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 또는 3개의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9조제2항제2호).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평등가족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함)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을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제1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함)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을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3항)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중 수산 및 해양레저스포츠 분야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함)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을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제6항제1호)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중소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함)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각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3) . 1. 법인의 활동범위가 1개의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3제1호) 2.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활동범위가 1개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3제2호)

※ 각 부처의 직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 확인방법 예시

예시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해당 주무관청이 어느 곳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는 단체 등이 법인설립허가를 받아야 할 주무관청은 설립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어느 행정관청에서 주관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며, 설립할 법인의 목적사업이 2개 이상의 행정관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설립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되는 모든 행정관청이 설립할 법인의 주무관청이 되기 때문에 각 주무관청의 허가를 모두 얻어야 합니다.

제1단계

설립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어느 행정관청에서 관장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각 행정관청의 관장업무에 따라 결정되며, 각 행정관청의 관장업무는 「정부조직법」 및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제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설립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주무관청은 「정부조직법」 및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 접속하여 「정부조직법」을 검색하여 ‘제4장 행정각부’ 이하에서 설립하려는 법인의 해당 주무관청의 관장업무를 먼저 확인합니다.

제2단계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의 해당 주무관청의 관장업무를 살펴보면,

「정부조직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검사사무·행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대한 사무를 관장” 하도록 되어 있고, 「정부조직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사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대한 사무를 관장”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부조직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소방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 접속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검색합니다.

제3단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제2항제10호에 따르면, “법무부의 인권국장은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및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지도·감독 업무를 관장” 하도록 되어 있는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 자원봉사단체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법무부라고 할 것입니다.

해당 주무관청을 확인한 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접속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여 해당 행정관청의 업무위임에 따라 각각의 주무관청에 법인설립 허가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면 됩니다.

2.2.2. 설립허가 신청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제출서류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준비를 끝마친 설립자 또는 설립발기인들은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서와 정관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민법」 제32조 및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참조).

신청서의 기재방법

“신청인”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사무총장 등)의 주소·성명 등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대표자는 창립(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법인”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소재지는 주소, 건물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기재된 소재지는 정관에 기재된 사무소 소재지와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일치해야 합니다.

※ <설립허가신청서(예시)>는 각 주무관청별로 양식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해당되는 각 주무관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립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예시)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발기인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32조 및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참조).

1. 설립발기인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를 적은 서류 및 정관)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각 주무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주무관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의 허가 시 주된 검토사항

신청서의 검토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각 주무관청은 다음 사항을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참조).

법인의 명칭과 설립목적, 사업 등이 각 주무관청의 업무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주무관청에 따라 허가요건이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법인설립의 필요성,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법인명칭의 유사성,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등을 허가요건으로 판단합니다.

법인설립의 필요성

법인의 설립목적과 활동사업의 독자성, 전문성, 비영리성, 합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설립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허가신청을 한 법인설립의 주된 목적이 막연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은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목적인지를 검토합니다.

또한,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상근직원의 여부 및 독립된 사무실 등의 재정적 뒷받침도 검토합니다.

법인명칭의 유사성

설립 신청한 법인의 명칭이 기존법인의 명칭과 유사한지 여부도 검토대상입니다.

법인의 명칭이 기존법인의 명칭과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설립이 허가되지 않기 때문에 유사명칭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법인에 출연된 재산의 평가가 적절하게 평가되었는지, 또는 부동산의 경우 등기하여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사원의 수와 자격, 연회비 액수의 적정성, 회비 징수방법 등을 검토하여 법인운영의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

허가여부의 결정 및 통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무관청은 일정 기간 내에 설립신청사항을 심사해 허가를 하거나, 허가를 하지 않는 등의 처분을 내립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은 서면으로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 설립허가 이후 ① 법인의 명칭 변경, ② 사업내용 변경, ③ 허가조건 변경, ④ 소재지 변경, ⑤ 대표자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발급된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간혹,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에 조건을 붙여 법인설립허가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인설립 허가일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실시할 것’, ‘목적사업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중단하지 말 것’, ‘법인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을 하지 말 것’ 등이 있습니다.

2.3. 설립등기

2.3.1. 설립등기 및 설립신고 등

비영리사단법인 설립등기

법인설립등기의 시기

법인설립허가 신청자는 설립허가 서면을 주무관청으로부터 통지받은 후 법인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 제33조).

따라서 설립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법인설립허가가 있는 때부터 3주 이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49조제1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0조제1항 참조).

찾기 쉬운 생활법령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 관할 법원등기소 위치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서비스소개-전국등기소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립등기 신청인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등기신청인이 되며, 법인의 이사들은 각자 대표권이 있으므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대표권을 제한 받는 이사의 경우에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참조).

설립등기신청서에 인감을 날인하기 위해서는 그 인감을 미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및 「상업등기법」 제25조제1항).

설립등기 사항

설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설립등기신청서](#)에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49조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및 「상업등기법」 제24조제3항).

목적

√ 법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그 사업을 통하여 법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명칭

사무소

√ 법인의 사무소는 법인의 사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말하며, 사무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중 1개를 주된 사무소로 정하고, 그 이외의 사무소는 분사무소로서 함께 기재합니다.

설립허가의 연월일

√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정관에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사항들을 기재합니다.

자산의 총액

√ 정관에 기재한 기본재산 이외의 기타 부동산, 동산 및 채권 등을 포함하는 적극재산의 총액에서 채무 등의 소극자산을 공제한 순자산액을 기재합니다(상업등기선례 제1-323호 및 상업등기선례 제202203-3호 참조).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 정관에 자산에 대해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이사의 성명, 주소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관에 기재해야 하고(「민법」 제41조) 그 제한 사항을 등기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0조).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찾기 쉬운 생활법령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 √ 법무사 등의 대리인에 의해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합니다.

등기의 목적

- √ 어떠한 종류의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단법인의 설립’이라고 기재합니다.

법원 또는 행정기관 등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서의 도달연월일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금(자산의 총액)의 1000분의 2이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설립과 함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등록면허세 매 건당 40,200원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다만, 대도시(「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함)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면허세의 3배가 가산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 등록에 의한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는 그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법인설립 등기신청수수료는 35,000원이고 설립등기시 함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7,0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설립등기 신청서류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법인의 정관

창립총회의사록(이사의 자격증명서)

- √ 법인 설립 시 선임되는 이사는 정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사의 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관에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창립총회의사록 및 취임승낙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창립총회의사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본문).
- √ 다만, ①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이고, ②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는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단서 및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법인 고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책서비스-법무/검찰-공증-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등(초)본

- √ 인감신고서 및 그 인감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서와 이사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등기사항으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서 또는 인증이 있는 허가서 등본

자산총액증명서 (재산목록)

인감신고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위임장

√ 법무사 등 대리인에 의해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서류

√ 이사회 의사록: 사단법인 설립등기 시 이사회 의사록은 필요적 첨부서류는 아니나 정관에서 이사회 의사록의 권한으로 정하고 그 사항을 이사회에서 결의한 경우 이사회 의사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 의사록 공증: 등기신청 시 첨부되는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인증 제외대상 법인은 공증인의 인증이 면제됨).

√ 번역문: 등기신청 서류 중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이를 번역하여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번역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번역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번역문을 공증받을 필요는 없음).

√ 법인인감카드발급 신청서: 법인인감증명서는 설립등기 완료 후 법인인감도장을 지참하여 법인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 (HSM USB) 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단법인 등기신청서 작성 방법 및 첨부서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신고

설립신고를 위한 필요서류

법인은 설립등기일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을 말하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말함) 부터 2개월 이내에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법인설립신고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및 정관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법인과세 수탁자 (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 대표수탁자 및 그 외의 모든 수탁자)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함]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법인과세 수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를 말함)

사업목적

설립일

재산이전 보고

재산이전 보고서의 제출

찾기 쉬운 생활법령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설립허가 신청할 때 제출했던 재산목록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게 이전하고 일정 기간 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예,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이때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예금 등의 법인 명의로의 금융기관예치, 주식의 명의개서, 각종 재산권의 권리이전 등 적절한 방법으로 법인소유로 이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법인 설립등기 보고

설립등기 보고서류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거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3. 비영리사단법인의 능력

3.1. 사단법인의 능력

3.1.1. 권리능력

비영리사단법인의 권리능력

권리능력의 범위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민법」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은 자연인의 권리능력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되는 가족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법인의 권리능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권리능력은 성질에 의한 제한, 법률 규정에 의한 제한 및 정관목적에 의한 제한을 받습니다.

비영리법인의 권리능력 제한

성질에 의한 제한

법인은 사람이 가지는 생명권, 친권, 배우자의 권리 및 상속권 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을 수증자(受贈者)로 하는 유증은 인정되어 포괄유증을 통해 상속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 "유증(遺贈)"이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해 자기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단독행위를 말합니다. 유증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비율액으로 증여하는 포괄유증(包括遺贈)과 어느 번지의 토지를 증여한다든가 A주식회사의 주식을 2만주 증여한다고 하는 것과 같이 특정재산을 증여하는 특정유증(特定遺贈)이 있습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법인은 사람의 천연적 성질인 가족법상의 법률관계는 가질 수 없지만, 재산권, 명예권, 신용권 등은 법인에게도 인정됩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7851 판결).

법률에 의한 제한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률의 규정으로는 「민법」 제81조(청산법인의 권리능력을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규정), 「상법」 제173조(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와 같은 특별 이유에 의한 개별적인 제한규정이 있을 뿐 법인의 권리능력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목적에 의한 제한

법인은 정관이 정한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정관을 등기해야 합니다(「민법」 제40조제1호 및 제49조제2항제1호 참조).

※ "목적범위 내"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까지 목적범위 내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01. 9. 21. 2000그98 결정](#)).

목적수행에 필요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되며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2488 판결](#)).

법인의 권리능력이 목적범위로 제한된다면, 권리능력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벗어나는 행위의 결과는 법인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1479 판결](#)).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법인의 대표기관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고, 목적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의 결과 법인이 취득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41조).

3.1.2. 행위능력

비영리사단법인의 행위능력

행위능력의 범위

법인이 권리능력의 범위에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떠한 행위를 하였을 때 법인의 행위로서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법인이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의 행위를 필요로 하는데,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지위에서 법인을 위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을 "대표기관"이라 합니다. 즉, 대표기관의 행위만이 법인의 행위로 됩니다.

※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대표기관에는 이사(「민법」 제59조), 이사의 직무대행자(「민법」 제60조의2), 임시이사(「민법」 제63조), 특별대리인(「민법」 제64조), 청산인(「민법」 제82조) 등이 있습니다.

법인이 권리능력에 속하는 권리의 취득 및 의무를 부담하기 위한 행위들이 법인의 행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목적범위 내"에는 법인의 행위능력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법인의 행위가 아니라 대표기관 행위자 개인의 행위로, 상대방은 그 개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고, 만약 행위의 결과로 법인이 재산적 가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41조).

비영리사단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법인은 이사 등 대표기관이 그 직무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35조제1항 전단).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35조제2항).

불법행위의 요건

1. 사단법인의 **대표기관**이 불법행위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35조제1항 전단).

※ 사원총회, 감사 및 대표권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지만, 이들은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이들의 행위로 법인의 불법행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3다30159 판결](#)).

2. 대표기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야 합니다(「민법」 제35조제1항 전단).

대표기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나, 직무와 관련 없는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아닌 행위자 개인의 불법행위가 됩니다.

※ "직무와 관련하여"란 행위의 외형상 법인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더라도 법인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됩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15280 판결](#)).

※ "대표기관의 권한 밖의 행위이지만 직무집행행위와 사회관념상의 관련성을 가지는 행위"로 통상적 업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외관상으로도 그 업무행위와 유사하여 직무집행행위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위도 직무와 관련한 행위입니다([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2014 판결](#)).

3. **불법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이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대표기관이 ① 책임능력을 가지고서, ②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해행위로, ③ 그 가해행위가 위법하여, ④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은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35조제1항 전단).

4. 비영리사단법인의 기관

4.1. 사단법인의 기관

4.1.1. 임원선임

임원선임

임원이란

"임원"이란 어떤 단체에 소속하며 그 단체의 중요한 일을 맡는 사람으로서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임원은 이사와 감사를 말합니다.

임원의 선임

임원은 법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설립취지에 따라 계획된 비영리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비영리사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합니다.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은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 등의 경우에는 임원선임과 관련해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합니다.

임원의 임기와 중임 또는 연임 여부는 정관에 따릅니다.

※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기 종료 전에 임원을 해임한 경우에는 정관에 따라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임원의 변경과 등기

임원의 변경

임원 중 이사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민법」 제52조 참조).

주무관청에 따라 임원을 교체하여 선임(選任)한 경우에 임원 선임보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도

찾기 쉬운 생활법령

있습니다(예,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

임원변경에 따른 법인등기

임원 중 이사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에 대해 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조 참조).

따라서 임원에 관한 개선(改選)으로 ① 기존의 임원이 퇴임, ② 새로운 임원의 취임, ③ 임원의 중임, ④ 임원 대표권의 제한 등의 임원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에 대해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원변경으로 이사의 정수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원변경을 이유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정수를 확인하기 위해 정관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사"는 사단법인에 있어서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기관인 반면, "감사"는 사단법인의 의사에 따라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하의 임원에 관한 내용은 '이사'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합니다.

① 임원의 퇴임

임원의 퇴임 등기는 이사가 사임하거나 이사의 해임, 이사의 사망 또는 그 밖의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퇴임한 이사의 성명과 퇴임사유 등을 기재하여 임원의 퇴임등기를 합니다.

"이사의 사임"으로 임원의 퇴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임의 의사를 확인하는 [사임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사의 해임"으로 임원의 퇴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와 함께 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해임을 증명하는 [사원총회\(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해야 되고 그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본문).

√ 다만, ①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이고, ②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는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단서 및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이사의 사망"으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사망사실을 기재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법인 변경등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사가 파산선고, 성년후견개시 또는 형의 선고 등으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판결 및 결정등본 등을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임원의 취임

기존 이사의 임기 만료 등으로 새로이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취임한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취임취지 및 등기연월일을 기재하여 임원취임등기를 합니다.

이사의 취임등기를 위해 [법인의 변경등기 신청서](#)와 이사를 선임한 공증 받은 [사원총회\(이사회\)의사록](#), [취임승낙서](#)(사원총회의사록에 취임을 승낙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취임예정자가 그 의사록에 날인한 경우에는 취임승낙서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됨), 취임승낙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 제출,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③ 임원의 중임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후 재선되어 다시 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도 법인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즉 동일인이 다시 취임하여 전임 임기만료일과 후임 임기개시일이 동일한 경우에도 이사의 임기가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의 지위가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취임등기와 퇴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등기실무상 퇴임취지와 재취임취지를 중복기재하지 않고 중임의 취지를 기재하는 중임등기로 취임등기와 퇴임등기를 대신합니다.

- √ 다만, 등기선례에 따르면, 임기 만료된 이사가 정관에 따라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권리·의무를 행사하던 중에 재선되어 전임 임기만료일과 후임이사의 임기개시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중임등기가 아닌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사의 임기만료 전에 중임되는 임기를 새로 시작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사임서를 받아 사임으로 인한 퇴임과 취임 등기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중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 주민등록등본, 인감 및 인감증명서, [법인의 변경등기 신청서](#) 등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④ 임원 대표권의 제한 신설 등

이사의 대표권과 관련하여 그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때에는 ‘대표권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취지와 그 등기연월일 및 대표권 있는 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대표권 제한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대표권 있는 이사의 성명·주소와 변경취지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하며, 대표권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때에는 ‘대표권 제한규정 폐지의 취지와 그 등기연월일’을 기재합니다.

- √ 대표권 제한규정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는 정관에 기재된 대표권 제한규정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정관변경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권 제한규정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 등을 이유로 법인등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와 공증 받은 [사원총회\(이사회\)의사록](#) 및 정관변경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등기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임원변경에 관한 변경등기의 등록면허세는 40,200원이며(「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등기신청수수료는 7,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4.1.2. 이사

이사

이사란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민법」 제58조제1항 및 제59조제1항).

이사의 직무

찾기 쉬운 생활법령

법인의 대표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대하여 법인을 대표합니다(「민법」 제59조).

이사가 대표하는 사무는 법인의 모든 사무로 제한이 없으며,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자가 법인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집행권한

이사는 법인의 모든 내부적 사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됩니다(「민법」 제58조).

이사는 ① 법인설립 허가 이후, 법인설립등기를 해야 하고(「민법」 제33조), ② 재산목록을 작성·비치해야 하며(「민법」 제55조제1항), ③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파산을 신청해야 하고(「민법」 제79조), ④ 법인이 해산하는 때에는 청산인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민법」 제82조), ⑤ 사원명부를 작성·비치해야 하며(「민법」 제55조제2항), ⑥ 사원총회의 소집(「민법」 제69조 및 제70조) 및 사원총회의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민법」 제76조).

이사의 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의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민법」 제61조).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란 그 사람이 속하는 사회적 지위, 종사하는 직업 등에 따라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로, 일반적으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말합니다.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때에야 이사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이 됩니다(출처: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참조).

위반 시 제재

이사가 본인의 임무를 해태한 경우, 이사는 법인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민법」 제65조 참조).

이사가 각종의 법인등기를 게을리 하거나, 재산목록의 작성 및 비치의무를 위반 또는 부정기재를 한 경우, 사원명부의 작성 및 비치의무를 위반 또는 부정기재한 경우, 사원총회의사록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파산선고의 신청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민법」 제97조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

이사의 대표권 제한

이사의 대표권 제한

이사의 대표권은 ① 정관에 의한 제한, ② 이익상반에 따른 제한, ③ 복임권의 제한 등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① 정관에 의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기재해야 합니다.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대표권의 제한은 무효입니다(「민법」 제41조).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관에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규정을 기재한 때에는 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0조,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 √ 이사의 대표권제한 규정을 정관에는 기재하였으나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법인은 이사와 거래한 제3자에게 대표권의 제한을 주장할 수 없으며 그 제한을 위반하여 대표권을 행사한 이사의 행위의 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됩니다.

사단법인의 경우 사원총회에서 이사의 대표권제한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9조제1항 단서).

- √ 사원총회에서 이사의 대표권제한을 의결한 경우에도 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0조).

② 이익상반에 따른 제한

이사가 법인의 재산을 넘겨받은 경우 등 이사의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상반되는 때에는 이사에게는 대표권이 없습니다(「민법」 제64조 전단).

- √ 이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감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법인을 대표하며(「민법」 제64조 후단), 이 때의 특별대리인은 법인의 일시적인 대표기관으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만 법인을 대표합니다.

다만, 이사의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하더라도 다른 이사가 있으면 그 다른 이사가 법인을 대표하면 되므로 다른 이사도 없는 경우에만 특별대리인을 선임합니다.

이사가 법인의 이익과 상반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인을 대표한 경우에는 그 행위는 권한 없는 대표행위로서 법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서울고법 1965. 4. 7. 선고 64나1106 제1민사부 판결](#)).

③ 복임권(復任權)의 제한

이사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대표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이사가 직접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조).

다만,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이사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사에 의해 선임된 대리인은 법인의 기관이 아니고, 법인의 대리인입니다.

- √ 이사는 본인이 선임한 대리인의 선임·감독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민법」 제121조제1항).

이사의 퇴임 또는 해임

퇴임 또는 해임 시의 사무처리

이사의 퇴임과 해임은 정관에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

※ 임기 만료, 해임 또는 자의로 퇴임한 이사는 그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계속하여 법인의 사무를 수행합니다.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 다른 이사가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에는 퇴임한 이사가 계속하여 법인의 사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됩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875 판결](#)).

이사회

의의

"이사회"는 법인의 사무집행을 결정하기 위해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의결기관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사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 정관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법인의 필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를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능

정관에 이사회를 두도록 규정한 경우, 이사회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4.1.3. 감사

감사

의의

법인은 이사에 대한 감독기관으로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습니다(「민법」 제 66조).

감사에 대한 등기사항

감사는 법인 내부의 사무집행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감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감사는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③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④ ‘③’의 사항들을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등을 수행합니다(「민법」 제 67조).

위반 시 제재

감사는 이사와 마찬가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감사가 법인의 사무 검사·감독에 대한 주무관청의 검사·감독을 방해하거나, 주무관청 또는 사원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민법」 제 97조제3호 및 제4호).

4.1.4. 사원총회

사원총회

의의

사원총회는 비영리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으로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는 기관으로, 그 구성원인 사원은 평등한 지위에서 법인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가집니다.

종류

사원총회에는 "통상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통상총회"는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정관이 정한 시기에 소집되는 총회를 말하며(「민법」 제69조), 소집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가 정하면 됩니다.

"임시총회"는 ①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민법」 제67조제4호), ② 이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민법」 제70조제1항), ③ 총 사원 5분의 1 이상(정수는 정관에서 증감할 수 있음)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경우(「민법」 제70조제2항 전단) 등에 소집됩니다.

사원총회소집 절차

사원총회의 소집은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을 통지하고 그 밖의 정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소집합니다(「민법」 제71조).

소집통지는 정관의 규정에 따르면 되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사원 전원에게 알릴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합니다.

※ 비영리 사단법인의 사원총회 소집통지

Q. A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이사로서 임시총회를 소집하려고 합니다. 5월 15일 오전 10시에 사원총회가 개최되는 경우 A는 최소한 언제까지 사원총회의 소집통지를 발송해야 하나요. 그리고 소집통지의 방법은 특정되어야 하나요?

A. A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이사로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원총회의 소집통지는 사원총회 개최일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을 적시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사원총회가 5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경우 소집통지는 5월 15일의 전일인 5월 14일부터 1주간 전에 발송되어야 하므로, 5월 7일 24시까지 각 사원들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민법」 제70조 및 제71조).

사원총회의 결정사항

이사 또는 그 밖의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사원총회에서 결의해야 합니다(「민법」 제68조).

특히, 정관을 변경하거나 법인을 임의 해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원총회의 결의로 결정해야 합니다.

사원총회의 정족수

사원들은 평등한 결의권을 가지며(「민법」 제73조제1항), 결의에 필요한 정수는 정관에 따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결의에 필요한 정수는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 결의하면 됩니다(「민법」 제75조제1항).

5. 비영리사단법인의 운영

5.1. 등기 및 정관변경

5.1.1. 등기

등기제도

법인의 등기사항

법인은 그 존재나 내용을 일반인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을 위해 그 조직이나 정관 등을 등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을 설립할 때의 설립등기와 사무소 이전등기, 분사무소 설치등기, 설립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의 변경등기 및 해산등기 등을 해야 합니다.

법인이 해야 할 등기

설립등기

해당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은 그 설립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49조제1항 및 「민법」 제53조).

※ 설립등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설립등기-설립등기 및 설립신고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소 이전 및 분사무소 설치 등의 등기

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법인은 해당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이전 및 설치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50조, 제51조 및 제53조).

※ 사무소 이전 및 분사무소 설치등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비영리 사단법인의 운영-주소 및 분사무소-주소의 변경>](#)과 [<비영리 사단법인의 운영-주소 및 분사무소-분사무소 설치·이전 및 폐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등기

법인설립등기사항(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의 연월일,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52조 및 「민법」 제53조).

※ 변경등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비영리 사단법인의 기관-사단법인의 기관-임원선임>](#) 과 [<비영리 사단법인의 운영-등기 및 정관변경-정관의 변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

청산인은 해산사유와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사항을 취임 후 3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등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5조제1항).

청산종결등기는 청산종결 내용에 대해 청산종결일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등기해야 합니다(「민법」 제94조 참조).

※ 법인의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비영리 사단법인의 소멸-청산-청산법인의 기관 및 직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의 효력

효력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무관청의 허가로 법인은 설립되고,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으로서 성립됩니다(「민법」 제33조 및 제49조).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사무소 이전 및 분사무소 설치등기, 변경등기,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는 그 등기할 사항들을 등기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조).

위반 시 제재

법인의 대표기관이 해야 할 등기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민법」 제97조제1호).

5.1.2. 정관의 변경

정관변경

정관변경이란?

"정관변경"이란 법인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하며,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을 가집니다(「민법」 제42조제2항).

정관변경을 위한 정족수

비영리사단법인은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42조제1항).

정관변경은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이며, 정관에서 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고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도 그 규정은 무효가 됩니다.

정관변경 허가신청

제출서류 (예시)

정관을 변경하려는 법인은 정관변경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제46조 참조).

찾기 쉬운 생활법령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대비표를 첨부함)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 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경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각 주무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주무관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관변경의 동기

정관변경의 효력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42조제2항).

등기의 효력

허가받은 변경사항이 등기해야 할 사항인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9조제2항, 제52조 및 제54조).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의 연월일,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성명, 주소 등의 정관기재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관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52조 및 제53조).

정관변경에 따른 변경등기 시 첨부서류

[정관변경등기신청서](#)에 정관의 변경취지가 기재된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본문), 주무관청의 허가서,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①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이고, ②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는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단서 및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정관변경에 관한 변경등기의 등록면허세는 40,200원이며(「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로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등기신청수수료는 7,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5.2. 주소 및 분사무소

5.2.1. 주소

법인의 주소란

법인의 주소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법인의 주소로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6조).

※ "주된 사무소"란 법인의 최고수뇌부가 존재하는 장소를 말하며, 사무소가 2개 이상인 때에는 중심이 되는 중요한 사무소를 말합니다.

주소의 등기

등기사항

"법인의 주소"는 법인을 설립할 때의 설립등기사항입니다(「민법」 제49조).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인주소의 효과

법률효과

「민법」 그 밖의 법률은 주소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변제의 장소(「민법」 제467조)

어음행위의 장소(「어음법」 제2조제3항, 제4조, 제21조, 제76조제3항 및 「수표법」 제8조)

재판관할의 표준(「민사소송법」 제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제72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등)

「민사소송법」상의 부가기한(「민사소송법」 제172조제2항)

「국제사법」상 준거법을 결정하는 표준(「국제사법」 제2조제2항)

5.2.2. 주소의 변경

주사무소 이전

사무소의 이전

사업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관에 기재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해야 합니다.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에 따른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사항입니다(「민법」 제49조제2항).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등기

찾기 쉬운 생활법령

변경등기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를 변경해야 하며, 사무소 이전이 동일한 등기소 관할 구역 내에서의 이전인지 또는 다른 등기소 관할 구역으로의 이전인지에 따라 변경등기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 등기소 관할 구역의 동일여부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 등기소 관할 구역 내로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동일 등기소 관할 구역 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기존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3주 이내란, 이전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3주 이내를 말합니다(「민법」 제51조제1항 및 제53조).

주된 사무소 등기이전 신청서와 주무관청의 허가서,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본문), 이전일자결정 등 이전업무집행사항을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 또는 이사과반수결의서 등을 제출합니다.

다만, ①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이고, ②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는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단서 및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등기소 관할이 다른 곳으로 주사무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도 법인은 기존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3주 이내란, 이전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3주 이내를 말합니다(「민법」 제51조제1항 및 제53조).

만약, 법인에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에서도 주사무소 이전사실을 등기해야 합니다.

등기소 관할이 다른 곳으로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기 전의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새로 이전하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주사무소 이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2항, 「상업등기법」 제55조).

√ 위의 주사무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이전하기 전의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새로 이전하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이전 연월일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99조제1항).

구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 ① 새로운 주소지의 이전등기 신청서, ② 구 주소지의 이전등기 신청서,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주무관청의 허가서, 이전일자 결정 등 이전업무집행사항을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 또는 이사과반수결의서 등을 제출하면 새로운 주소지의 등기소에는 이 서류들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서는 주사무소 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는 기존의 법인의 등기부를 폐쇄합니다.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등기소 관할이 동일한 곳으로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112,500원이고(「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찾기 쉬운 생활법령

등기소 관할이 다른 곳으로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록면허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새로운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지급해야 하는 등록면허세는 112,500원이고(「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라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주사무소 이전으로 사무소가 대도시 내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이전(移轉)은 법인의 설립으로 파악해 법인설립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경우 그 등록면허세는 3배 가산되며(「지방세법」 제28조제2항제2호),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②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로 그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주사무소를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새로운 소재지에서 하는 이전등기 신청수수료는 35,000원, 그 밖의 이전등기 신청수수료는 7,000원 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2.3. 분사무소 설치, 이전 및 폐지

분사무소(지회) 설치 및 등기

분사무소(지회) 설치를 위한 허가

법인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분사무소(지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설립등기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 이내에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합니다(「민법」 제50조).

주된 사무소 관할 등기소에 하는 분사무소(지회) 설치등기

설치하는 ‘분사무소(지회)의 소재지와 설치연월일’을 기재한 [분사무소 설치등기 신청서](#)와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본문), 주무관청의 허가서 및 분사무소(지회) 설치를 결정한 [이사회의회의록](#) 또는 [이사과반수결의서](#)등을 제출합니다.

다만, ①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이고, ②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는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단서 및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설치되는 분사무소(지회) 관할 등기소에 하는 분사무소 설치등기

설치할 분사무소(지회) 소재지에서 주된 사무소의 설립등기사항과 ‘법인성립연월일 및 분사무소(지회) 설치연월일’을 기재한 [분사무소 설치등기 신청서](#)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및 주무관청의 허가서 등을 제출합니다.

분사무소(지회) 이전 및 등기

분사무소(지회) 이전을 위한 허가

찾기 쉬운 생활법령

법인이 설립등기한 분사무소(지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이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전등기

법인이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합니다(「민법」 제51조제2항).

주된 사무소 관할 등기소에 분사무소(지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사무소 이전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기재’한 [분사무소\(지회\) 이전등기 신청서](#), 주무관청의 허가서,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이전일자결정 등 이전업무집행을 결정한 [이사회회의사록](#) 또는 [이사과반수결의서](#) 등을 제출합니다.

기존 분사무소(지회) 관할 등기소에 하는 분사무소(지회) 이전등기

기존 분사무소(지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분사무소 이전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기재’한 분사무소 이전등기 신청서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주무관청의 허가서 등을 제출합니다.

새로운 분사무소(지회) 관할 등기소에 하는 분사무소(지회) 이전등기

새로운 분사무소(지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새로운 주소지에서 주된 사무소의 설립등기사항과 ‘분사무소 이전연월일 및 법인성립연월일을 기재’한 [분사무소 이전등기 신청서](#)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주무관청의 허가서 등을 제출합니다.

분사무소(지회) 폐지 및 등기

분사무소(지회) 폐지를 위한 허가

설립등기한 분사무소(지회)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폐지등기

주무관청으로부터 폐지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분사무소(지회) 폐지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분사무소(지회) 폐지의 취지와 그 연월일을 기재’한 [분사무소\(지회\) 폐지등기 신청서](#), 주무관청의 허가서,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및 폐지업무집행사항을 결정한 [이사회회의록](#) 또는 [이사과반수결의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분사무소\(지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분사무소 폐지취지와 그 연월일을 기재’한 분사무소\(지회\) 폐지등기 신청서](#)와 주무관청의 허가서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등록면허세

분사무소 설치·이전·폐지의 등록면허세는 40,200원이고(「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대도시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계산하며(「지방세법」 제28조제2항제1호),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찾기 쉬운 생활법령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로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등기신청수수료는 7,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5.3. 사업운영

5.3.1. 목적사업

목적사업

목적사업이란?

"목적사업"이란 법인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 "목적사업"이란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에 기재된 목적사업을 말합니다.

목적사업의 운영

운영상 제한

비영리 사단법인에 출연된 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운영에 사용되어야 하고,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38조 참조).

비영리 사단법인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목적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목적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을 사원 등에게 배분하지 않아야 합니다[「민법」 제32조 및 「[2022년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 공익법인 관리 감독 업무 편람](#)」(법무부, 2022. 12. 발행) 11~12p 참조].

다만, 법인의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영리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2022년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 공익법인 관리 감독 업무 편람」 12p 참조).

비영리 사단법인이 비영리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수익사업 개시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 비영리 사단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비영리사단법인의 운영-사업운영-수익사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3.2. 수익사업

수익사업

수익사업이란?

"수익사업"은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것으로 목적사업의 경비충당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

수익사업의 구분

법인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수익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법인세법」 제4조제3항).

- ①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각 사업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하고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
- ② 이자소득
- ③ 배당소득
- ④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⑤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입은 제외함)
- ⑥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⑦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것

※ 비영리 사단법인이 목적사업의 경비충당을 위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하나요?

Q. 비영리 사단법인 甲은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유치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목적사업의 경비충당을 위해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별도로 주무관청 등에 신고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A.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와 함께 수익사업과 관련된 대차대조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그러나 「법인세법」은 법인세가 부과되는 수익사업과 그렇지 않은 수익사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의 유치원 운영은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4조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수익사업의 신고

수익사업의 운영

수익사업을 하려는 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만약, 정관에 수익사업의 근거조항 및 구체적인 사업종목의 등재가 없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수익사업의 근거조항 등을 신설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수익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수익사업 개시신고

비영리사단법인이 수익사업(「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한정함)을 개시하는 때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와 함께 수익사업과 관련된 대차대조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0조).

비영리사단법인이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을 운영하여도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수익사업을

찾기 쉬운 생활법령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영리법인과 같은 입장에서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5.4. 재산운영

5.4.1. 재산구분 및 처분 등

재산구분

재산의 구분

비영리 사단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이란 법인의 존립기초가 되는 재산을 기본재산이라고 합니다([『2022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법무부, 2022, 105면).

"운영재산"이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목적사업비와 그 운영경비에 사용될 수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2022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법무부, 2022, 47면).

기본재산의 처분 등

재산의 처분 등이란?

"재산의 처분 등"이란 기본재산을 매매,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또는 권리의 포기과 증감 등 기본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가져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해 정관에 기재된 자산에 관한 규정이 변경된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하고,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정수에 관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가 있어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조제4호 및 제42조제1항).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42조제2항 참조).

예산 및 결산 등

결산서류

법인은 매사업연도 종료 후 관련된 수지예산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합니다.

5.5. 업무보고 등

5.5.1. 주무관청에 업무보고 등

법인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업무보고를 위한 제출서류

주무관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찾기 쉬운 생활법령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해당 사업연도 및 현재의 재산목록 1부

법인서류 및 장부 비치

비치서류목록

법인은 아래의 서류 및 장부들을 비치해야 합니다(「민법」 제55조).

법인 성립 시 및 매년 3월 내 작성한 재산목록(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말에 작성)

사원명부 및 변경사항

※ 「민법」에서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서류 및 장부 외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정관,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등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사무 검사 및 감독

주무관청에 의한 감독

주무관청은 법인사무 검사 및 감독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사무 관계서류, 장부 또는 그 외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주무관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7조 참조).

5.6. 지원

5.6.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의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이란 영리활동이 아닌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법인도 포함)에게 행정지원 또는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비영리민간단체의 범위

비영리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찾기 쉬운 생활법령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않을 것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지원신청방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기한 법인이라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함)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참조).

사업범위가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고, 2개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그 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출서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신청서(「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법인의 경우는 이미 주무관청에서 필요한 서류를 받은 상태이므로 구비서류 중 “회원명부”만 제출해도 됩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회칙 1부

해당 연도 및 전년도 총회회의록 각 1부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회원명부 1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지원내용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으로부터 필요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5조제2항).

특히,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찾기쉬운 생활법령

대하여 소요경비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

비영리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재정지원

공모방식으로 사업신청을 제출받아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 선정을 거쳐,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7조).

우편요금 지원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편물 중 우편요금 별·후납 우편물에 대하여는 일반 우편요금의 100분의 25를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6. 비영리사단법인의 소멸

6.1. 해산

6.1.1. 해산사유

비영리 사단법인의 해산

법인의 해산

"법인의 해산"이란, 법인이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그치고 청산절차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의 해산사유에는 ① 법인의 존립기간 만료 및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③ 파산, ④ 설립허가 취소, ⑤ 비영리사단법인의 특별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법인은 해산됩니다(「민법」 제77조).

해산으로 법인의 권리능력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청산에 필요한 정도로 제한될 뿐이므로 해산 후 청산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은 제한된 범위에서 권리능력을 가집니다.

감독기구

비영리사단법인의 해산과 관련하여 법원의 검사·감독을 받습니다(「민법」 제95조).

비영리 사단법인의 해산사유

① 법인의 존립기간 만료 및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인의 존립시기가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를 정관에 기재해야 하고, 존립시기가 만료되면 법인은 해산됩니다(「민법」 제40조).

②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의 설립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목적을 달성할 것이 없는 경우 또는 본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은 해산됩니다.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불능은 사회 관념에 따라 판단되나,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더라도 정관의 목적을 변경하면 법인을 해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③ 파산

법인이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채무초과 상태가 된 때에는 이사는 법인의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79조).

법인의 파산원인은 법인의 채무초과 상태이면 되고, 법원의 파산선고가 있으면 법인은 해산하게 되며, 파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을 가지게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8조).

이사 또는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파산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법인의 파산절차

파산신청서를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법원에 제출 → 파산신청서를 심사 후 법원의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파산절차의 기관으로 파산과 관련한 직무 수행) 선임 → 파산선고 공고 및 법인 설립을 허가한 주무관청에 파산선고 통지 → 법원 또는 파산관재인의 채권자 집회 소집 → 채권자에 배당 → 파산종결 결정 → 파산종결 결정 공고 및 법인 설립을 허가한 주무관청에 파산종결 결정 통지

④ 설립허가 취소

법인이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8조).

※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란, 법인의 기관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원총회가 공익을 침해하는 결의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363 판결](#)).

법인 설립허가 취소는 행정처분으로 법인이 이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소심판·소송 또는 취소처분의 무효 확인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⑤ 비영리사단법인의 특별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원이 1명도 없게 되거나, 사원총회 결의로 법인의 임의해산이 결정된 경우를 말합니다(「민법」 제77조제2항).

사원총회에서의 법인해산 결의는 총 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해산결의를 할 수 있지만, 그 정수를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조 및 [대법원 2007. 7. 24. 자 2006마635 결정](#)).

6.1.2. 해산허가

해산허가 신고

해산허가를 위한 제출서류

법인이 스스로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는 제외)에는 그 청산인은 해산 등기를 완료한 후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을 기재한 [법인해산신고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해산 당시의 정관

해산 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해당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잔여재산 처분

잔여재산 처분을 위한 요건

찾기 쉬운 생활법령

해산한 비영리사단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사람에게 귀속되는데, 정관으로 지정하지 않았거나 또는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유사한 목적을 위해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민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

이때 잔여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0조제2항 후단).

해산한 비영리사단법인의 잔여재산 처분에 대한 절차는 각 주무관청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주무관청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처분을 위한 제출서류

주무관청에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와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처분사유서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소재지, 종류, 수량 및 금액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사단법인의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록 사본 1부

법인의 처분되지 않은 재산은 국가의 재산(국고)으로 귀속됩니다(「민법」 제80조제3항).

6.2. 청산

6.2.1. 법인의 청산

청산이란

법인의 청산이란?

"법인의 청산"이란 해산한 법인의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권리능력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법인이 파산에 의해 해산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고, 파산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민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릅니다.

감독기관

법인의 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합니다(「민법」 제95조).

청산법인의 권리능력

권리능력의 범위

청산법인은 해산 전의 법인과 동일성을 가지지만,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81조).

따라서 청산법인이 청산의 목적범위 밖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청산절차

청산절차

법인의 청산절차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법인 해산등기와 신고 → ② 현존사무의 종결 → ③ 채권의 추심 → ④ 채무의 변제 → ⑤ 잔여재산의 인도 또는 파산 신청 → ⑥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 청산절차의 진행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이 사이트의 [<비영리 사단법인의 소멸-청산-청산법인의 기관 및 직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영리 사단법인이 해산한 경우 비영리 사단법인의 채권자는 어떻게 되나요?

Q. A는 비영리 사단법인 甲에 대해 1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9년 1월 甲은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 해산되었습니다. 이때 A의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A. 비영리 사단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청산인이 선임됩니다. 선임된 청산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권리·의무를 가지며,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 A는 비영리 사단법인 甲의 청산인이 채권신고의 공고를 하면, 본인이 채권자임을 신고하면 됩니다(「민법」 제87조 및 제88조)

위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산인이 채권자 A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도 청산으로부터 제외되지 않습니다. 만일 채권신고 기간 내에 신고도 하지 못했고, 법인이 따로 채권사실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법인이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만 자신의 채권을 변제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9조 및 제92조).

6.2.2. 청산법인의 기관 및 직무

청산법인의 기관

청산인

비영리사단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가 청산인이 되어 청산법인의 업무를 집행합니다(「민법」 제82조).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능력의 범위 내에서 내부의 사무를 집행하고, 외부에 대하여는 청산법인을 대표합니다(「민법」 제87조제2항).

청산인 선임

청산인이 되는 사람은 ① 정관에서 정한 사람, ② 정관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면 사원총회결의로 선임하거나, ③ 사원총회 결의로 선임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법인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민법」 제82조).

법인의 해산당시, 청산인이 될 사람이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감사의 청구에 의해 청산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83조).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감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조).

그 밖의 기관

청산법인은 해산 전의 법인과 동일성을 가지므로, 감사·사원총회 등은 청산법인의 기관으로서 계속하여 그 권한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감사는 계속하여 청산인의 직무를 감독하고, 사원총회는 여전히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산법인의 사무

청산인의 사무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아래의 사무를 수행합니다.

청산법인의 사무가 아래의 사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청산의 본질상 필요한 모든 사무는 청산법인의 사무에 포함됩니다.

① 법인 해산등기와 신고

청산인은 취임 후 3주 이내에 해산 사유와 해산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및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하고, 그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85조제1항 및 제86조제1항).

해산 등기를 하지 않고, 청산사무만을 종결한 경우에는 법인이 소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에게 법인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493 판결](#)).

청산 중에 해산등기사항에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85조제2항 및 제52조).

청산 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과 주소를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86조제2항 및 제52조).

청산인이 등기사무를 게을리 하고, 주무관청에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은폐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처분을 받습니다(「민법」 제97조제1호 및 제4호).

파산으로 법인을 청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는 법원이 직접 등기소에 촉탁하고, 주무관청에 통지하기 때문에 청산인은 법원에 등기신청하거나 주무관청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② 현존사무의 종결

청산인은 법인의 현존사무를 종결시켜야 합니다(「민법」 제87조제1항제1호).

예를 들면, 법인 해산 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계약을 이행하고 법인을 청산해야 합니다.

③ 채권의 추심(「민법」 제87조제1항제2호)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은 채권, 조건부 채권과 같이 즉시로 추심할 수 없는 채권은 양도, 환가처분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

④ 채무의 변제(「민법」 제87조제1항제2호)

㉓ 채권의 신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의 신고를 알려야 하고, 그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민법」 제88조제1항).

만약,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됨’(채권이 제외되면 변제받을 수 없게 됨)을 표시해야 합니다.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개인에게 그들의 채권의 신고를 알려야 합니다(「민법」 제89조 전단).

㉔ 변제

청산인은 채권신고 기간 내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합니다(「민법」 제90조 전단).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에 대해서는 청산인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으므로, 청산인은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자에 대해 지연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민법」 제90조 후단).

청산 중인 법인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 변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1조제1항).

그 채권이 조건이 있는 채권,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 또는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인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채권을 변제하면 됩니다(「민법」 제91조제2항).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가 채권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청산에서는 제외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변제해야 합니다(「민법」 제89조).

만약,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을 통해 변제하면 됩니다(「민법」 제487조).

채권신고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청산에서 제외되지만,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이 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않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조).

만약, 잔여재산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의 경우에는 제외된 채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⑤ 잔여재산의 인도 또는 파산신청

㉓ 잔여재산의 인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후에도 법인의 재산이 남은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귀속권리자에게 넘겨 주어야 합니다(「민법」 제87조제1항제3호).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는 우선, 정관에서 지정한 사람(「민법」 제80조제1항), 정관에 지정한 사람이 없거나, 지정방법을 정관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해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0조제2항). 마지막으로 위의 방법으로도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민법」 제80조제3항).

㉔ 파산 신청

청산절차 중에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변제하기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신청하고, 공고해야 합니다(「민법」 제93조제1항 및 제2항).

※ 「민법」 제93조에서 청산절차 중 법인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송사건절차법」(1996. 12. 30. 법률 제5206호)부칙 제2조 및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규칙」 제7조에서 ‘2032년까지 청산절차 중 파산신청의 공고를 유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파산으로 파산관재인이 선정되면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사무를 인계해야 하고,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됩니다(「민법」 제93조제2항).

찾기 쉬운 생활법령

그러나 청산인이 파산관재인에게 인계하는 사무는 파산재단에 관한 사무로 청산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권리와 의무에 한하며, 청산인의 임무가 종료되며, 그 밖의 임무에 대해서는 청산인은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⑥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되면 청산인은 3주 이내에 종결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94조).

청산종결등기를 해야만 법인의 청산에 대해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산등기와 청산인 취임등기

등기

법인이 해산되면 청산인은 취임 후 3주 이내에 해산 사유(파산 제외)와 해산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및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5조제1항).

해산등기와 청산인 취임등기는 실무상 1건으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각각 별도의 건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산등기 전에 청산인 취임등기를 먼저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청산인이 법인해산등기 및 청산인선임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에는 법원 등이 직권으로 촉탁서에 파산결정등(초)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각 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 파산등기를 촉탁하여, 파산종결의 등기를 하면 법인의 등기는 폐쇄됩니다.

해산등기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해산등기에는 해산사유 및 취지, 해산연월일을 기재하고, 청산인취임등기에는 청산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법인의 해산등기 및 청산인취임등기에는 해산을 증명하는 서면,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경우는 제외), 정관, 청산인의 취임승낙서와 주민등록등본, 청산인의 인감신고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

법인의 해산을 증명하는 서면

- ① 법인의 존립기간 만료로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가 법인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따로 서면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 ②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을 증명하는 서면
- ③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 불능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달성 또는 달성불능을 확인하는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
- ④ 설립허가 취소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취소서 또는 설립허가 취소통지서
- ⑤ 비영리사단법인의 특별 해산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사원이 없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청산인도 선임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결정서의 등본

사원총회 결의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해산을 결의한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도 첨부

청산인의 취임을 증명하는 서면(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경우는 제외)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관으로 청산인을 정한 경우에는 정관, 사원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본문),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법원의 청산인선임결정서등본 등을 첨부합니다.

다만, ①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이고, ②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는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단서 및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청산인의 대표권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규정을 증명하는 정관, 사원총회의사록 또는 청산인회의사록, 여러 명의 청산인이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증명하는 정관, 사원총회의사록 또는 청산인회의사록 등을 첨부합니다.

등기서류의 제출

해산법인은 위의 법인의 해산을 증명하는 서면 및 청산인의 취임을 증명하는 서면(분사무소에 해산등기 및 청산인취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주무관청의 허가서 등만 제출하면 됨)과 [해산등기 및 청산인취임등기 신청서](#)를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법인해산 및 청산인취임등기의 등록면허세는 40,200원이고(「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는 그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등기신청수수료는 7,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청산종결 등기

청산의 종결

청산이 종결되면 청산인은 3주 이내에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94조).

청산종결 등기를 위한 제출서류

청산종결의 취지와 연월일을 기재한 [청산종결등기 신청서](#)와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청산종결등기의 등록면허세는 40,200원이고(「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는 그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등기신청수수료는 7,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